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58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2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시 한부모 가구 우대(김기표의원 안)	8

I. 개요

1.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58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4. 23.
- (3) 회 부 일 : 2026. 4.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5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가. 근로장려금 개요

□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한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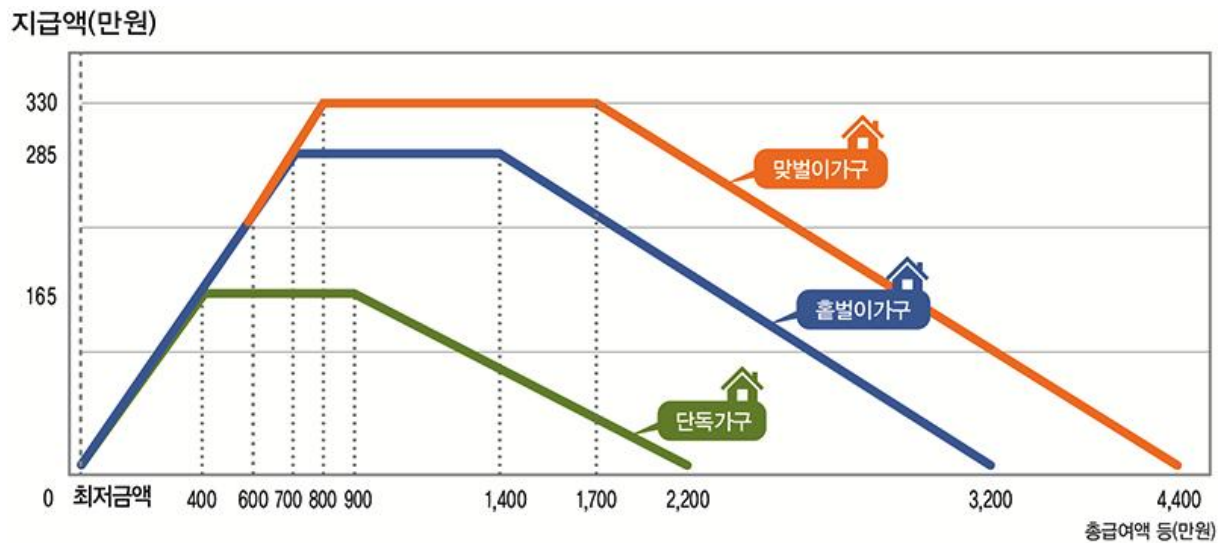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200만원(단독가구 기준)~4,4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기준)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¹⁾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짐.

근로장려금 산정 산식을 살펴보면, ① 일정 소득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고(점증구간; 그래프 우상향 구간), ② 그 후 최고지급액 구간에 이르면 지급금액이 일정하게

1) 재산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의미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함

유지되다가(평탄구간; 그래프 수평구간), ③ 일정 소득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감소하여(점감구간; 그래프 우하향 구간) ④ 소득상한구간에 이르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그래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식]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400 ~ 900만원	165만원	700 ~ 1,400만원	285만원	800 ~ 1,700만원	330만원
900 ~ 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1,400 ~ 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1,700 ~ 4,4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주)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는 약 416만 가구이고 총 지급액 규모는 4조 6,567억원으로, 최근 7년간 지급대상 가구와 총 지급액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

(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급 가구	179	410	432	426	442	426	421	416
총 지급액 규모	13,381	45,049	44,683	44,732	44,871	47,254	46,675	46,567

주1. 귀속연도별 최종 지급현황
주2.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의 통계로서 조세감면액과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총지급액은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2022년 귀속 상반기(2022년 9월 신청, 12월 지급), 2022년 귀속 하반기(2023년 3월 신청, 6월 지급), 2022년 귀속 정기(2023년 5월 신청, 9월 지급) 신청에 대한 지급액이 포함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근로장려금 관련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4조 7,122억원이 조세감면되었으며, 2026년에는 4조 5,7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감면액	49,256	44,826	46,035	45,036	47,281	47,122	46,581	45,760

주1: 지급금액 인상, 단독가구 연령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2019년부터 반기신청·지급 시행으로 2019년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 2019.12월 조기지급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자녀장려금 개요

-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행법에 따르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함.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자격요건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고,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2,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지급액(100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지급액(100만원)이 지급됨.

[현행법 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및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

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급액이 50~70만원으로 상향조정(종전 30~50만원)되었음.

또한, 2022년에는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8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지급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완화하였고, 2023년에는 제도 도입시부터 동일하게 유지했던 소득상한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지급액을 50~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자녀장려금 개정 연혁]

제·개정	'14		'16	'17	'18	'22	'23		
지급	'15	'16	'17	'18	'18	'23	'24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소득자 추가				
가구원 구성	부양자녀가 있는 홀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 지급액	가구구성	총소득기준 (만원)		자녀1인당 지급액 (만원)		지급액 (만원)		총소득기준 (만원)	지급액 (만원)
	홀벌이	0~2,100		50		70	80	0~2,100	100
		2,100~4,000		30~50		50~70	50~80	2,100~7,000	50~100
	맞벌이	0~2,500		50		70	80	0~2,500	100
		2,500~4,000		30~50		50~70	50~80	2,500~7,000	50~100
	재산	1.4억원 미만 * 1억 초과시 50%만 지급			2억원		2억원 * 1.4억 초과시 50%만 지급	2.4억원 * 1.7억 초과시 50%만 지급	
주택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		폐지						
기타	(제외) 당해연도 3월 기준 기초수급자				수급자 요건 폐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2024년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는 약 88만 가구이고 총 지급액 규모는 8,900억원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

(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급 가구	94	88	74	71	58	52	95	88
총 지급액 규모	4,917	7,543	6,457	6,060	4,966	5,035	9,904	8,900

주1. 귀속연도별 최종 지급현황

주2.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의 통계로서 조세감면액과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총지급액은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2022년 귀속 상반기(2022년 9월 신청, 12월 지급), 2022년 귀속 하반기(2023년 3월 신청, 6월 지급), 2022년 귀속 정기(2023년 5월 신청, 9월 지급) 신청에 대한 지급액이 포함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자녀장려금 관련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855억원이 조세감면되었으며, 2026년에는 7,9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감면액	6,471	6,080	4,977	5,028	9,855	8,754	7,98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시 한부모 가구 우대(김기표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제100조의3제1항) ○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유형</th><th>총소득기준금액</th></tr> </thead> <tbody> <tr> <td>단독가구</td><td>2,200만원</td></tr> <tr> <td>홀벌이 가구</td><td>3,200만원</td></tr> <tr> <td><u>맞벌이 가구</u></td><td>4,400만원</td></tr> </tbody> </table> -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 요건(제100조의3제5항)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u>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u> ○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70세 이상일 것(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요건: 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u>맞벌이 가구</u>	4,400만원	☐ <u>한부모 가구 우대</u> ○ (현행과 같음)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유형</th><th>총소득기준금액</th></tr> </thead> <tbody> <tr> <td>단독가구</td><td>2,200만원</td></tr> <tr> <td>홀벌이 가구</td><td>3,200만원</td></tr> <tr> <td><u>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u></td><td>4,400만원</td></tr> </tbody> </table> - (현행과 같음) ☐ <u>홀벌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 제외</u> ○ (현행과 같음) ○ <u><삭 제></u> ○ (현행과 같음)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u>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u>	4,400만원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u>맞벌이 가구</u>	4,400만원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u>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u>	4,400만원																

현행	개정안																
②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간주 ☐ <신 설> ☐ 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5) ○ 홀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 </thead> <tbody> <tr> <td>7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td></tr> <tr> <td>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td><td>285만원</td></tr> <tr> <td>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td><td>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td></tr> </tbody> </table> ○ <u>맞벌이가구</u>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 </thead> <tbody> <tr> <td>8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td></tr> <tr> <td>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td><td>330만원</td></tr> <tr> <td>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td><td>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td></tr> </tbody> </table> ☐ 자녀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29) ○ 홀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산정방식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 <u>한부모 가구 별도 규정</u> ○ <u>한부모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u> ☐ <u>한부모 가구 산정시 우대</u> ○ (현행과 같음) ○ <u>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u>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표: 현행과 같음) ☐ <u>한부모 가구 산정시 우대</u>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현행		개정안												
<table><tr><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tr><td>2천1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수 × 100만원</td></tr><tr><td>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4천900분의 50]</td></tr></table>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4천900분의 50]	○ <u>맞벌이 가구</u> 자녀장려금 산정방식 <table><tr><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tr><td>2천5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수 × 100만원</td></tr><tr><td>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4천500분의 50]</td></tr></table>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4천500분의 50]	○ <u>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가구</u> 자녀장려금 산정방식 (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4천900분의 50]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4천500분의 50]													

* 김기표의원안 2026. 4. 23. 발의(의안번호 18585)

- ☐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산정함에 있어서 ‘홀벌이 가구’의 정의²⁾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일정 요건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홀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
 -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규정하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를 홀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부모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홀벌이 가구와 같이 총 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시에 홀벌이가구로 포함되어 같은 소득인 맞벌이 가구에 비하여 낮은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음.

□ 개정안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및 산정시 한부모 가구를 홀벌이 가구와 분리하여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있어서 한부모 가구를 보다 우대하려는 내용임.

□ 국가데이터처가 실시하는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부모 가구의 수는 약 149만 가구로, 그 수가 매년 149만~153만 가구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연도별 한부모 가구 수 현황]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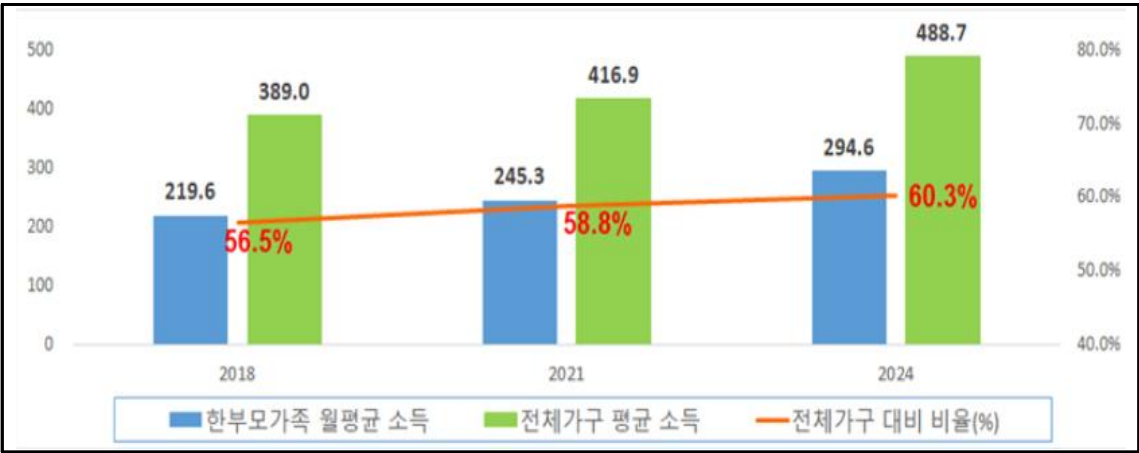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529,151	1,532,751	1,509,958	1,494,067	1,493,042	1,490,965

자료: 국가데이터처

성평등가족부(舊 여성가족부, 이하 동일)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³⁾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94.6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대비 6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부모 가구의 순자산액은 1억 1,56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 4억 4,894만원의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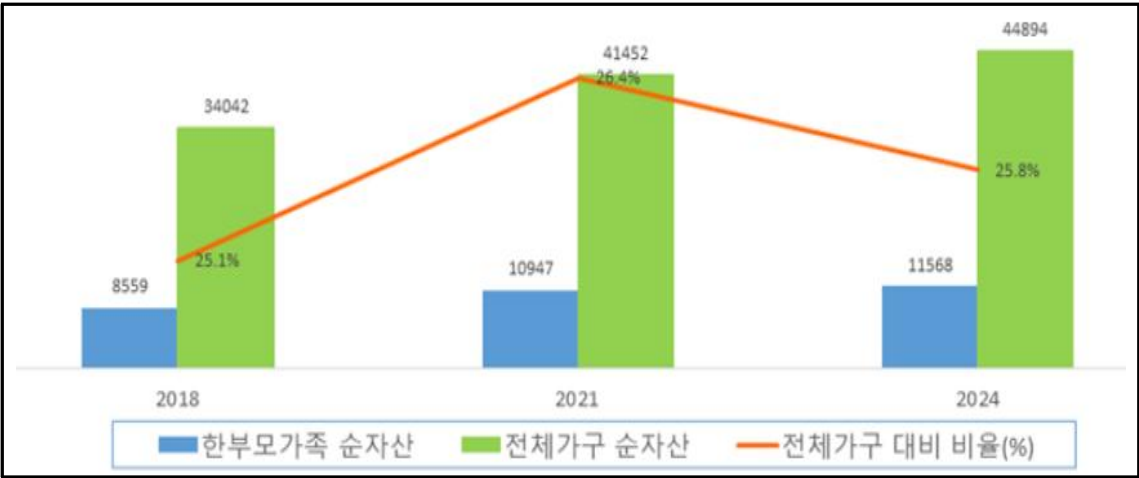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 순자산 현황]

(단위: 만원, %)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임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⁴⁾에 따르면, 양부모 가구의 소득 하위 20%(1분위 및 2분위) 비율은 16.1%이고, 홀벌이인 양부모 가구의 소득 하위 20% 비율은 28%인 반면, 한부모 가구의 소득 하위 20% 비율은 51.5%로 한부모 가구의 평균 소득이 양부모 가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분위별 가구 분포]

(단위: %)

가처분소득	한부모		양부모		
		일하는 한부모		홀벌이	맞벌이
1	31.4	22.1	7.5	15.4	4.2
2	20.0	20.0	8.6	12.6	6.9
3	14.2	16.4	9.3	10.8	8.6
4	8.8	10.5	10.0	11.0	9.6
5	5.8	6.9	10.4	11.0	10.2
6	5.1	6.1	10.5	10.1	10.6
7	4.9	5.9	10.6	9.1	11.2
8	4.3	5.2	10.8	8.0	12.0
9	3.2	3.9	11.0	6.7	12.9
10	2.5	3.0	11.3	5.3	13.9

자료: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⁵⁾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은 47.7%로, 양부모 가족 아동빈곤율 10.7%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등 한부모가족의 아동 빈곤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특히, 양부모 홀벌이 가구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수행하므로 외주 돌봄 비용을 크게 절감할 가능

4)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5)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2023.5.

성이 있으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 한 사람이 생계 노동과 가사 및 돌봄을 동시에 감당하여야 하므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나 방과후 활동과 같은 추가적인 경제적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산정 시 홑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우대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재정경제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한부모 가구는 소득세법상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 우대는 장려금 심사·산정 시 복잡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가구 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시 양부모 홑벌이 가구는 연 150만원의 배우자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연 100만원의 한부모 소득공제가 양부모 홑벌이 가구에 비해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부모 가구 해당 여부는 소득공제 시 이미 구분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장려금 심사·산정에 복잡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2031년 5년간 총 5,426억원(연평균 1,0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김기표의원안	△1,089	△1,069	△1,049	△1,030	△1,010	△5,246	△1,0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